

# 3월세무일지

## 2007년부터 달라지는 세무정보

### I. 국세기본법

-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
- 기한후 신고대상자를 환급세액이 발생한 자도 가능하도록 확대  
⇒ 2007. 1. 1. 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
-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50% 경감  
⇒ 2007. 1. 1. 이후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
- 신고불성실 가산세(2007년 귀속분부터)
  - 무신고가산세 20%, 부당무신고가산세 40%, 과소신고가산세 10%
  -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40%,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%
  - 가산세를 의무위반 종류별 1억원 한도로 제한(단, 고의위반인 경우 제외)
- 현금연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

### II. 부가가치세

-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시 「부가가치세법」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
- 사업의 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한 규정을 폐지(사업의 포괄 양도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)
- 도서 대여용역을 면세대상에 추가
- 매출할인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(현재 시행령 미개정)
-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
-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미등록 가산세(공급가액의 1%) 신설
-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「국세기본법」에 규정하여 적용
  - 무신고가산세 20%, 부당무신고가산세 40%, 과소신고가산세 10%
  -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40%,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%
  - 세금계산서 미교부, 위장·가공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중과 공급가액의 2%
  -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 가산세 신설 누락금액의 0.5%
-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시 휴업자·폐업자·유형전환자도 과세표준을 6월 환산하도록 개정
- 간이과세자로 납부의무 면제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가 없어도 환급하도록 개정 2007.1.1. 이후 납부분부터

# 3월세무일지

- 신용카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시 이면확인 규정 삭제(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제출 및 매출전표 5년간 보관시 공제됨) 2007.1.1. 이후 신고분부터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중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내용
  -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· 공장과 학교의 급식용역 ·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·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등에 대한 면세시한을 2009.12.31. 까지 연장
  - 택시운송사업자의 경감세액을 6월 이내에 지정용도에 미 사용시 추징규정을 신설하고, 경감기간을 2008.12.31. 까지 연장
  -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2009.12.31.까지 취득한 분에 대하여 한시 적용으로 개정,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을 8/108에서 6/106으로 축소함(중고자동차는 10/110임)
  -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의 80%(2007년까지는 90%)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입 가액에 대하여 공제함
  - 성실신고세액 공제의 과세표준 증가율을 30%에서 20%로 축소 2007.7.1.신고분부터
  -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(현금영수증)제도 시행 공급자가 세금계산서(현금영수증)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교부할 수 있도록 함 2007.7.1.부터 시행

## III. 양도소득세

- 장기보유특별공제(「소득세법」제95조 제2항)
  - 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2007년부터 중과세율(50%) 대상일 경우 배제
  - ②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07년부터 중과세율(60%) 대상일 경우 배제
  - ③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(60%) 대상일 경우 배제
- 장기보유특별공제율

| 보유기간            | 2006년 이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3년 ~ 5년 미만      | 10%      |
| 5년 이상 ~ 10년 미만  | 15%      |
| 10년 이상 ~ 15년 미만 | 30%      |
| 15년 이상          | 45%      |

- 15년 이상 보유 주택의 45% 적용 사례
  -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(거주요건 미비)
  -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포함하여 비과세되는 고가주택

● 실가과세 전면 시행(「소득세법」제96조 제2항, 소득령 제162조의2)

| 개 정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 2006년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7년 이후        |
| 부동산 양도소득세<br>과세 기준 | 예외 : 기준시가                      | 실지거래가액<br>전면 시행 |
|                    | 원칙 : 실지거래가액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고가주택, 단기매매거래<br>미등기자산, 1세대 3주택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비사업용 토지, 1세대 2주택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● 부당행위계산(「소득세법」제101조 제2항)

- 부당행위계산 기간 3년을 5년으로 적용

● 양도소득세의 세율(「소득세법」제104조 제1항)

-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  - 50% 세율로 양도세 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
-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
  - 60% 세율로 양도세 과세,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
- 법인세 30%세율 추가과세(2007년 양도분부터 적용)

●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(「소득세법」제64조 제1항)

- 1세대 3주택(60%세율), 1세대 2주택(50%세율), 비사업용 토지(60%세율)를 부동산매매업 자가 매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

●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(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 제2항 및 제99조의3 제2항)

- 신축감면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감면주택 외의 비과세 해당 주택을 2007.12.31.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신축감면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.